



|      |              |
|------|--------------|
| 문서번호 | 기획예산과-10654  |
| 결재일자 | 2015.8.21.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구청장 방침 제426호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 예산팀장 | 기획예산과장 | 기획재정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이범진    | 이정희  | 이윤영    | 박기웅    | 이비오  | 08/21<br>정원오 |
| 협조     |      |        |        |      |              |

- 민선6기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위한 -

#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계획



## 성 동 구

(기획예산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검 토 여 부  |
|--|--|
| 사 업 구 분  |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
| 소 통 분 야<br>고 려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민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구민의견 수렴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li> <li>●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li> </ul>   |
| 기 타<br>고 려 사 항   | 일 자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type="checkbox"/><br>성 인 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
| 타자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앙 부 처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 고 보 조 사 업 비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서 울 시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보 조 사 업 비 및 예 산 사 업 비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li> <li>●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li> </ul> |
| 언 론 홍 보<br>계 획   |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br>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 보 제 목 :</li> <li>● 중점 홍보사항</li> <li>-</li> <li>-</li> </ul> |  |
|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  |

# 순서

|                       |       |    |
|-----------------------|-------|----|
| I . 2016년도 재정운영 여건    | ----- | 1  |
| II . 예산편성 기본방향        | ----- | 2  |
| III . 2016년도 주요 변경내용  | ----- | 3  |
| IV . 2016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 ----- | 5  |
| 1. 세입예산 요구지침          | ----- | 5  |
| 2. 세출예산 요구지침          | ----- | 7  |
| V . 예산편성 추진일정         | ----- | 13 |
| VI . 행정 사항            | ----- | 14 |

## 【별첨】

- ① 예산편성 기준경비
- ② 사업별구조화 및 성인지지침
- ③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 ④ 예산편성 제출양식
- ⑤ 첨부서류 제출양식

- 민선6기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위한 -  
**2016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민선6기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구현 목표 달성에 재정력을 집중하고자 함

## I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

- **(세입규모) 구세는 재산세 등이 소폭 증가하나,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보조금 및 교부금을 제외하면 2015년 보다 축소 전망**
  - 구 세: 금호13구역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 소폭 증가
  - 세외수입: 재개발 관련 구유재산 매각 대상 감소 등으로 감소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및 내부거래 세입 감소
  - 의존재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다소 증가 전망
    - 경기여건 개선으로 인한 서울시 보통세<sup>1)</sup> 증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대상 확대
  
- **(세출소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보편적복지 매칭비, 재개발관련 소송반환금, 경제활성화, 공공복합청사 등 주민편의시설의 확충 투자소요 증가 전망**
  -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및 경직성 경비 증가
    - 옥수13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 공익주택특별공급 부담이득 반환 등
  - 민선6기 경제, 교육, 복지 등 7개 분야 시책 사업비 증가
    - 교육, 경제활성화, 복합청사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개선
  -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분담금 지속 증가

1) 보통세(7)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II

##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6기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 구현」 역점 사업 집중**
  - 7개 분야 시책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 친절한 구정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및 예산절감 긴축재정운영**
  -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
    - 과세자료 정비 및 재산세 콜센터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징수율 제고
  - 적극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 전수조사를 통한 불필요한 재산매각 및 변상금 부과, 압류 및 공매 등
  - 예산절감을 위한 기본경비 등 경상비 절감 노력 지속(2015년 예산재검토 반영)
- **선택과 집중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축소·통합폐지, 시급성이 낮은 사업 시기 조정
    - 관행적인 계속사업 중 효과가 미흡한 사업 과감하게 퇴출하는 “일몰제” 실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실·국, 부서별 예산요구 “실링제” 실시
  - 기존사업의 효과성 재검토하여 사업계획 구체화된 신규사업에 재투자
    - 공약사업, 해결 시급한 구민밀착형사업, 투자사업 용역비, 설계비 등 우선 반영
  - 여유 재원의 목적 범위내 활용(특별회계, 통합기금, 청사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과관리 강화**
  -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 사전·사후평가
  -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성과관리 강화
-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재정운용 상황 공시(매년 1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한 예산 감시 강화

### Ⅲ 2016년도 주요 변경내용

#### □ 주요 변경 내용

| 항 목                 | 현행규정  | 개 정 안   | 비고                                  |
|---------------------|---|---|-------------------------------------|
| 성과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성과계획서 작성</li> <li>※ 예산첨부서류 의회제출</li> </ul>   |                                     |
| 예산의<br>첨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개 항목</li> <li>- 공유재산 조서</li> <li>-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li> <li>- 직종별 정원 대비표</li> <li>- 명시이월비 설명서</li> <li>- 지방세지출보고서</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서</li> <li>- 성인지예산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개 항목(일부항목 추가)</li> <li>- 재정운용상황개요서</li> <li>- 통합재정통계 보고서</li> <li>- 공유재산 관련 서류</li> <li>- 재정관련 감사원 감사결과</li> <li>- 회계·기금간 이전서류 등</li> <li>- 예산편성 참여 주민의견서</li> </ul> |                                     |
| 민간이전<br>경비<br>(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조건</li> <li>-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 가능</li> <li>- 사업비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ul>   | <p>‘15회계연도 적용</p> <p>‘16회계연도 적용</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액: 3,091백만원</li> <li>- 최근 3년 자체수입 평균 증감을 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액: 2,719백만원</li> <li>- 최근 3년 자체수입 평균 증감을 <u>△0.12% 감소</u></li> </ul>   | 2015년 대비 10% 감액 조정                  |
| 출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502)</li> <li>&lt;신설&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502)</li> <li>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li> </ul>   |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

| 항 목                | 현행규정   | 개 정 안  | 비고                                      |
|--------------------|--|--|---|
| <b>세출예산<br/>분류</b> | <재무활동의 범위><br>• 내부거래지출<br>- 전출금(309)<br>공사·공단 경상전출금<br>- 공기업자본전출금(404)<br>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재무활동의 범위><br>• 내부거래지출<br>- <삭제><br>- <삭제>   | 재무활동(사업)<br>→ 정책사업                      |
|                    | • 일반보상금(301)<br>- 자율방범대원 <u>운영비</u> (04)   | • 일반보상금(301)<br>- 자율방범대 <u>실비지원</u> (04)   | 법령 근거에 따라<br>교부는 운영화<br>차별화             |
|                    | • 자치단체등이전(308)<br>-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8)<br><신설>   | • 자치단체등이전(308)<br>-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8)<br>「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br>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br>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급여 지원<br>근거 신설<br>지자체 집행→<br>교육부(교육청) |
|                    | • 자치단체등이전(403)<br>-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br>업비 (02)   | • 자치단체등이전(308)<br>-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br>대행사업비 (08)<br>• 자치단체등이전(403)<br>-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br>대행사업비 (02) | 경상적 경비와<br>자본적경비 <u>이원화</u>             |
|                    | • 내부거래(700)<br>- 기타내부거래(706-04)<br>내부유보금(04)<br>지방의회 삭감 경비 중<br>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br>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 예비비 및 기타(800)<br>- 예비비(801)<br>내부유보금(03)<br>지방의회 삭감 경비 중<br>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br>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그룹 변경                                   |

## IV 2016년 예산편성 일반 지침

### 1 세입예산 요구 지침

#### 기본 방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구노력 강화
- 세입원별로 징수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 부서별 소액이더라도 모든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1) 지방세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세목별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 실적, 평균 신장율, 201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세율·배분 방법 등의 변경사항 반영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 과세물건의 증감 추이, 현실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2) 세외수입

##### 【 경상적 세외수입 】

- 재산임대수입
  - 무상임대재산, 유희재산 등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확대
- 사용료, 수수료 및 사업 수입
  - 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 영리목적 유사시설의 요금, 공익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수수료: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 누락없이 반영
- 징수교부금
  - 각종 사용료, 수수료, 시세징수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계상



○ 이자수입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 재산매각수입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 도시계획 관련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당해 사업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 계상

○ 기타수입

- 각 부서별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납세액 징수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 세입을 최대 계상

**(3) 조정교부금 등**

-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 반영

**(4) 국고 및 시비보조금**

- 2016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내시하는 금액으로 계상
  - 내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누락없이 계상

**(5) 보전 수입 등**

○ 순세계잉여금

- 2015년도 결산 추계액을 계상하여 반영
- 결산 추계액에 따른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계

## 2 세출예산 요구 지침

### 기본방향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 자체점검을 실시,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시기 조정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사업,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
  - 정상적 경비인 행사성 경비,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적용 원칙, 성과평가 결과 지속여부 판단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효과부진사업에 대해 일몰제 적용으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
- 각종 경비의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구 자체로 정한 단위 단가 준수

### (1) 행정운영경비

#### □ 인력운영비 편성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한도액 범위내 요구

- 인건비는 2015. 9. 1.현재 부서별·직급별 직제상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 소요액을 산정하여 편성
- 정액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해당 인원분 편성
- 2016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이 원칙, 인건비 소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을 감안 감액하여 편성
- 공무직(환경미화원 및 청경 포함)은 총무과에서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편성하되 노사협의회 임금협약 및 합의사항에 따라 요구
- 시간제계약직 등은 개별 근거법령 등에 의한 2015. 9. 1.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현원에 대한 개별산출기초 명시

## □ 기본경비 편성

### ① 공통사항

- 각종 행정운영경비의 책정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15. 9. 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명시한 비목별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하되, 모든 경비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요구하고 2015년도 예산대비 원칙적 증액요구 불가(증액은 법정경비 증가 등 명확한 사유 기재)

### ② 일반운영비

-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만 편성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 금액 적용)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단가는 1식당 7,000원으로 계상

### ③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편성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 계상 금지

### ④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조직관련 조례 및 규칙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 제압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부서의 정책 사업 내 주요 세부사업에 편성(업무추진비가 주된 요소인 신규사업은 불가)

### ⑤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요구

## (2) 정책사업비

### □ 예산요구 시 준수사항

- 현재 추진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수정 보완한 후 예산 요구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전 관련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포괄성 예산 요구하지 않음

### □ 경상사업

#### ① 일반보상금

- 민간인 등에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 ② 포 상 금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소요액만 요구

#### ③ 행사운영경비

- 개최시기 · 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 ▶ 유사한 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통합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이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요구하지 아니함
- 행사·축제예산 별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사업구조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

#### ④ 출 연 금

-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한하여 출연금 편성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범위내 요구
- 출자 또는 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동의 필요(지방재정법 제18조)

## ⑤ 민간위탁금

-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요구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 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⑥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단, 불가피한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예산 요구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도입)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구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자본보조
- 보조금(민간이전) 경비 요구시 각국별 2015년 대비 10% 감액 조정 요구

### **보조금 기준액 하향 조정(국·시비 보조사업 제외)**

- ❖ 대 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 변 경: 자체수입 감소( $\Delta 0.12\%$ )로 **한도액 하향**  
(2015년 3,091백만원 → 2016년 2,719백만원)
- ❖ 편 성: 2015년 편성액 대비 10% 감액 조정

## □ 투 자 사 업

### ○ 계속사업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산반영
- 이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도 사업시행 가능성,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연차별 예산지원 규모 판단에 앞서 총 사업비 변경요인을 면밀히 검토,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가가 초래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 토목, 건축 등 계속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및 집행전망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신규사업비는 계약심사 기법을 적용 삭감수준 반영 절감 편성

### ○ 신규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성동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 제고
-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간주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후 해당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요구
- 감리비는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전문회사 등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 시행년도에 요구
- 시설부대비는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등 직접 공사관련 소요부대경비에 한함

#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 대 상           | 심사대상 및 내용  | 심사시기  | 심사내용   | 관련근거   |
|---------------|--|---|--|--|
| 중기지방재정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세입·세출예산</li> <li>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li> </ul>  | - 예산편성전   |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 계획 수립   | - 지방재정법 제33조   |
| 지방재정 투자심사     | <p><b>&lt; 구 자체심사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li> <li>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li> <li>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5억원 미만</li> </ul> <p><b>&lt; 서울시 심사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li> <li>구 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li> <li>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li> </ul> <p><b>&lt; 중앙심사 &gt;</b> - 市 투자심사 완료 후, 중앙 투자심사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전액 시비, 전액 구비 또는 시·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li> <li>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li> </ul> <p><b>&lt; 재심사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li> <li>투자심사 통과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사업</li> <li>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으로 자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li> <li>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전</li> <li>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터 실시 설계 前까지 심사의뢰</li> <li>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 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필요성, 시급성</li> <li>사업계획의 타당성</li> <li>주변여건 및 현황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li> <li>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li> </ul> |
| 공유재산 관리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li> <li>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구의회 의결 필요)</li> <li>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의 신·증축·건축비)</li> <li>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상</li> </ul>  | - 예산편성전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 필요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민간이전 비용 성과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 운영</li> <li>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li> <li>대상 : 모든 보조사업</li> <li>※제외대상: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보조, 법정업무사업, 공모사업 등 평가에 실익이 없는 사업</li> </ul>   | - 예산편성전   | - 성과관리카드 작성하여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평가 후 예산요구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출자·출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구의회 동의를 필요</li> </ul>   | - 예산편성전   | - 출자·출연금 규모 적정성 등  | - 지방재정법 제18조   |

## V 2016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 통보 ..... 8. 21.(금)
  - 예산편성 담당자 교육 ..... 8.24.(월)
- 사업부서 2016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출 ..... 9. 4.(금)
  - 제출예산 요구서 제출(각 국별 심의회 실시)
    - 기존사업(시설유지, 경상사업) ..... 9. 11.(금)
    - 신규사업(주요업무계획 반영) ..... 9. 23.(수)
- 주민참여예산 총회 의견수렴 ..... 9. 24.(목)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조정 ..... 10. 23.(금)
- 예산부서 검토 ..... 10. 27.(화)
- 부구청장 주재 예산안 조정 회의 .... 10. 28.(수)~29.(목)
- 예산안 최종 보고 및 확정 ..... 11. 6.(금)
- 2016 예산안 구의회설명회 ..... 11. 9.(월)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설명서, 각종현황) ..... 11.12.(목)
-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 인쇄 ..... 11.18.(수)
- 2016 예산(안) 구의회 제출 ..... 11.20.(금)
- 2016 예산(안) 심의의결 ..... 12.21.(월)한
- 예산편성 결과 보고 및 확정고시 ..... 12.24.(목)
- 2016 예산서 발간 ..... 12.30.(수)



## VI 행정 사항

###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 9. 4.(금)까지

- 세입예산 ..... 세무1과 수합 제출
  - 2016세입예산 요구서(양식 제1호 서식) ----- 전산입·출력,
  -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양식 제2호 서식) ----- 엑셀작성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 세출예산 요구서(양식 제3호 서식) ----- 전산입·출력

### □ 세출사업예산: 기존사업 9. 11(금), 신규사업 9. 23.(수)까지

- 2016 세출예산 요구서 (양식 제3호 서식) ..... 전산입·출력
- 사업별 설명서 (양식 제4,5호 서식) ..... 워드작성, 전산입출력
- 투자사업 우선순위 목록 (양식 제6호 서식) ..... 워드작성
- 계속비사업 조서 (양식 제7호 서식) ..... 워드작성
- 명사이월사업, 채무부담 행위 조서 (양식 제8호,9호 서식) ..... 워드작성
-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양식 제109호 서식) ..... 전산입·출력
- 민간이전, 행사축제 성과평가서 및 총괄표(양식 제11,12,13호 서식) 워드 작성
- 성인지 예산서 (양식 제14호 서식) ..... 전산입·출력
- 일몰대상사업 선정결과(양식 제15호 서식) ..... 워드작성
- 성과계획서 (양식 제16호 서식) ..... 전산입·출력
- 기타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등

□ **첨부서류 ----- 10. 15.(목)까지**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 주민참여 의견서 ..... 마을공동체 담당관
- 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양식 제13호 서식) ..... 총무과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기획예산과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기획예산과
- 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기획예산과(공단,재단)
- 공유재산조서 및 관련서류 (양식 제14호 서식) ..... 재무과
-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양식 제15호) ..... 재무과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 재무과(공단)
-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지출현황 ..... 세무1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세무1·2과

□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편성**

- 각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 항목 경비 요구 시 총무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건비 관련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한도에서 총괄·조정한 “총액인건비 세출예산 총괄요구서” 제출

□ **예산반영 사전절차 등 필수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물품정수 배정 조정 사항은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 제출

□ **2014년도 결산검사 및 2015년도 예산사업 재검토 결과 반영**

- 반복적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없도록 합리적 예산수립
- 2015년도 예산사업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비 전년수준 이하 편성

□ **주요사업 구청장 사전보고 및 근거자료 제출**

- 법령, 법규, 지침, 계획서(방침서), 공문, 타 자치구 현황 등
-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의 증감이 크거나 타구와 비교되는 사업,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예산 요구

□ **일몰대상사업 선정 제출**

- 각 부서별 자체 평가 및 일몰 대상 선정(하위 10% 사업) 제출
- 일몰사업 발굴부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2015년 예산의 90% 수준 실링 범위내 사업요구, 신규사업 별도 요구

□ **법정의무경비 반영 철저**

- 재난관리기금(지방세 1%) 등

- 첨 부
1. 예산편성 기준경비 1부
  2. 사업구조화, 성인지예산 지침 1부
  3.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1부
  4. 예산편성 제출양식 1부
  5. 첨부서류 제출양식 1부
  6. 의무지출 재량지출 구분 기준 1부
  7. 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 1부. 끝.